

『구미시지방세계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관련법령인 「회사정리법」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회사정리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관련법령인 「회사정리법」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